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3명(소방경 3명)에서 4명(소방경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9.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3명(소방경 3명)”을 “4명(소방관 4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2”를 “321”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5”를 “304”으로 한다.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1,035”를 “1,0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35”를 “1,0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8”을 “1,02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를 “5”로 하고, 일반직 계 “4”를 “5”로 하며, 4급 이하 “4”를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영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되는 산림청 소속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

지는 별표 2의1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6명

② 부칙 제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1]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대통령령 제000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323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5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317
고위공무원단	7
3급 또는 4급 이하	306
전문경력관	4
소방공무원 계	4
소방경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명(소방경 3명)</u> 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 --- <u>4명(소방경 4명)</u>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2</u>	<u>321</u>	-1
•	•	•	
•	•	•	
일반직 계	<u>316</u>	<u>31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5</u>	<u>304</u>	-1
•	•	•	
•	•	•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35</u>	<u>1,036</u>	+1
일반직 계	<u>1,035</u>	<u>1,03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8</u>	<u>1,029</u>	+1
·	·	·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u>	<u>5</u>	+1
일반직 계	<u>4</u>	<u>5</u>	+1
4급 이하	<u>4</u>	<u>5</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